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989 붜 호

제출연월일 : 2013. 6.

제 출 자:중구청장

1. 개정이유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해 폐기물의 종류·성상별 보관시설 또는 분리보관용기 설치기준 상향 조정 및 울산광역시 내에서 유통 가능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색상 단일화 추진으로 공급 촉진을 기하고, 쓰레기 불법 소각·투기 신고자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의무 세대수 조정: 10세대 → 20세대(안 제10조제3항제4호)

- 나. 울산광역시 내에서 유통 가능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색상 단일화 추진 으로 공급 촉진(안 별표1) 분홍색(10ℓ,20ℓ) → 흰색(반투명) 분홍색(5ℓ,50ℓ,100ℓ) → 녹색
- 다. 쓰레기 불법 소각·투기 신고포상금 동일 신고자에 대한 자격 및 지급 제한 규정 신설(안 제23조제1항제4호)

- 3. 근거법규 가. 「주택법」제16조 나.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다. 「환경부 쓰레기 불법 소각・투기 신고포상금제도 개선방안 지침」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 2013. 4. 22. ~ 2013. 5. 13.(의견 없었음)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10"을 "20"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일 신고자의 신고건수 합계가 월 5건, 연간 10건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포 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쓰레기 봉투의 용량・용도・색상 및 재질

봉투용량	용 도	색 상	재 질
5ℓ	일반용	녹색	
10 ℓ	일반용	흰색	O 크l 시 드l 크ll
20 ℓ	일반용	(반투명)	폴리에틸렌 (단, 공공용은 폴리프로필렌)
50 ℓ	일반용	녹색	(단, 중중용은 골디프도푈덴)
100 ℓ	일반용, 공공용	※공공용-청색	

주) 쓰레기 봉투 상단에는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거나, 끈을 달아서 쓰레기가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 ② (생략) ③ 1. ~ 3. (생략) 4. <u>10</u>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자 ⑤ (생략)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 ~ 3. (현행과 같음) 4. <u>20</u>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① (생략) 1. ~ 3.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23조(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동일 신고자의 신고건수 합계가 월 5건, 연간 10건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서는 포 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포상 금 지급대상자는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 다. ② (현행과 같음)			
· /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개정 2005. 9. 26>	[별표1] <u>쓰레기 봉투의 용량・용도・색상 및 재질</u> 봉투용량 용 도 색 상 재 질 5ℓ 일반용 녹색 10ℓ 일반용 흰 색 20ℓ 일반용 (반투명) 50ℓ 일반용 녹색 100ℓ 일반용, 공공용 ※ 공공용 - 청색 - 쓰레기 봉투			

의 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89)

1. 의 아 명 :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복지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해 폐기물의 종류·성상별 보관시설 또는 분리보관용기 설치 기준 상향조정 및 울산광역시 내에서 유통 가능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색상 단일화 추진으로 공 급 촉진을 기하고, 쓰레기 불법 소각·투기 신고자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 의무 세대수 조정 : 10세대 → 20세대(안 제10조제3항제4호)
- 울산광역시 내에서 유통 가능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 색상 단일화 추진으로 공급 촉진(안 별표1)
 - 분홍색(10ℓ,20ℓ) → 흰색(반투명)

- 분홍색(5ℓ,50ℓ,100ℓ) → 녹색

- 쓰레기 불법 소각・투기 신고포상금 동일 신고자에 대한 자격 및 지급제한 규정 신설(안 제23조제1항제4호)
- 4. 근거법령 「주택법」제16조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 「환경부 쓰레기 불법 소각·투기 신고포상금제도 개선방안 지침」

5. 검토보고(전문위원 김권수)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16조,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환경부 쓰레기 불법 소각· 투기 신고포상금제도 개선방안 지침을 근거로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해 폐기물의 종 류·성상별 보관시설 또는 분리보관용기 설치기준 조정 및 울산광역시 내에서 유통 가능한 재사용 종량제봉투 색상을 단일화하고, 쓰레기 불법소각·투기 신고자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 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

다만, 제23조 신설 제4항에서 동일 신고자의 신고건수 합계가 월 5건, 연간 10건으로 제한하여 동일인에게 많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함은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